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UD택시 도입 비용 지원 〉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7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78호) .....      | 1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UD택시 도입비용 지원(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 3  |
| ※ 참고자료 .....                            | 10 |

##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2217478)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3. 16.

다. 회 부 일 : 2025. 3. 1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수단의 경우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긴 대기시간 및 불규칙한 배차 등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UD택시 도입비용 지원(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시·도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① -----<br>-----<br>-----<br>-----<br>-----<br>-----<br>-----<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3의2.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 사업</u>                                                |
| 4. ~ 5. (생략)                                                                                                                                                                                     | 4. ~ 5.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 부칙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국의 시·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1)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2)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이른바 “장애인 콜택시”라 부르는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대수 이상 도입·운영하고 있음.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특히, 버스, 택시 등 일반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에게 주요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는 지속적인 공공재정 투입이 수반됨에 따라 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에 충분하도록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음3).

한편, 지금까지 시판 차량 중에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 특별교통수단은 기존 시판 차량을 「교통약자법」에 따른 탑승설비의 규격과 기준에 맞게4) 개조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 ⑫ (생략)

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3) 2025년 기준 전국 중증보행장애인 수는 648,961명인데 비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4,715대(중증보행장애인 수의 0.73%)에 불과한 수준임.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

2026년 1월에 택시 차량으로 사용 가능하며, 좌석의 변형을 통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된(휠체어 미탑승 시 일반 좌석으로 이용) 승합자동차<sup>5)</sup>가 출시되어 시판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지방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인뿐 아니라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도 탑승할 수 있는 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 택시(이하 “UD택시”)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서비스를 민간차원에서도 분담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다양화,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 간의 차별 완화,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나. 이동식 간이침대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

나. 휠체어 고정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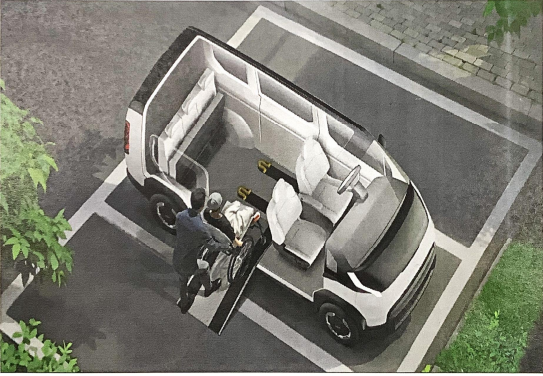
다. 손잡이(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자고정장치”는 “교통약자 고정장치”로 본다.

⑥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5) 자동차 제작사 기아에서 출시된 PV5모델

**< 출시 차량 및 기존 특별교통수단 비교 >**

| 구분                     | 출시 차량<br><예시 : 기아 PV5 WAV>                                                                                                                                                                                                                                 | 특별교통수단 차량<br><카니발 등 개조 차량>                                                                                                                                                                                                    |
|------------------------|------------------------------------------------------------------------------------------------------------------------------------------------------------------------------------------------------------------------------------------------------------|-------------------------------------------------------------------------------------------------------------------------------------------------------------------------------------------------------------------------------|
| <p><b>탑승 위치</b></p>    |   <p>- 휠체어 이용자, 비장애인 모두 옆문 탑승</p>                                                       |   <p>- 휠체어 이용자는 차량 후면으로 탑승<br/>-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탑승하여 불편</p> |
| <p><b>좌석 배열</b></p>    |  <p>- 휠체어 이용자 탑승 시, 시트 접은 후 탑승<br/>- 동승자와 인접 착석 가능<br/>- 휠체어 공간을 파내는 개조가 필요하지 않음</p>                                                                                    |  <p>- 휠체어 공간 개조 후 이 공간을 타 용도로 활용 불가(일반 좌석 등)<br/>- 동승자는 앞줄 시트에 착석</p>                                                                     |
| <p><b>출시 차량 장점</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뒷문으로 탑승하는 특별교통수단과 달리 옆문으로 탑승(보도에서 탑승)</li> <li>○ 특별교통수단보다 높은 천장으로 인해 차량바닥을 파내지 않아 승차감이 좋으며, 차고가 낮아서 휠체어 탑승이 편리하고 안전</li> <li>○ 휠체어 탑승 시에도 뒷좌석에 보호자 1명이 휠체어 옆에 함께 앉을 수 있어, 보호자는 휠체어 앞줄에 탑승해야 하는 현행보다 개선</li> </ul> |                                                                                                                                                                                                                               |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로, 영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UD택시를 도입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은 2000년부터 UD택시를 도입하여 2024년 기준 약 14,500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짐. 일본은 2020년부터 도입되었고, 2024년 기준 약 13,000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짐.

#### < UD택시 도입 해외 사례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개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UD택시에 탑승하는 교통약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는 탑승설비에 관한 규격과 기준<sup>6)</sup>을 UD택시에도 적용하거나 별도의 규격과 기준을 정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서는 기존 차량을 UD택시로 ‘교체’하는 사업을 재정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 면허 발급<sup>7)</sup>에 따른 차량 구입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셋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약자법」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UD택시 도입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7491호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6) 각주 3) 참고

7) 현 제도 하에서, 택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택시 공급 대수가 적거나(세종시의 경우 해당)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택시 면허가 신규 발급됨.

**< 유사 법률안 비교 >**

| 구분           | 개정안<br>(제2217478호, 최보윤의원<br>대표발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br>일부개정법률안」(제2217491호<br>최보윤의원 대표발의) |
|--------------|-----------------------------------|------------------------------------------------------|
| 개정취지         | UD택시 도입비 지원                       |                                                      |
| 근거법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개정조문         | 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안 제16조의3 신설                                          |
| UD택시<br>도입방식 | 교체, 개조                            | 개조                                                   |
| 재정지원<br>주체   | 시·도<br>(조례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기타           | -                                 | 동 개정안에는 일반택시의 UD택시<br>필수도입 제도를 신설(안 제16조의2<br>제3항)   |

**나. 국토교통부 의견**

휠체어 이용자와 일반인이 모두 이용 가능한 UD(Universal Design) 택시 확대를 위하여 UD택시 도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4

## 참고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7491호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br>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br>-----<br>-----<br>-----<br>-----<br>-----<br>-----지원하여야 한다. -----<br>-----<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신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신설>                                                                                                                                                                                                                        | 제16조의3(택시의 이용 보장 등) ①<br>「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                                                                                                                                    |

|                                                                                                                                                                                               |                                                                                                                                                                             |
|-----------------------------------------------------------------------------------------------------------------------------------------------------------------------------------------------|-----------------------------------------------------------------------------------------------------------------------------------------------------------------------------|
|                                                                                                                                                                                               | <p><u>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u></p>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
|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생략)                                                                                                                                                                  | 제16조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현행 제16조의3과 같음)                                                                                                                                     |
|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생략)                                                                                                                                                                 | 제16조의5(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현행 제16조의4와 같음)                                                                                                                                    |
| 제33조(과태료) ① (생략)                                                                                                                                                                              | 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p> <p>③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생략)</p> | <p>② -----<br/>-----<br/>-----.</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6조의4제3항을-----<br/>-----</p> <p>③ 제16조의4제2항을-----<br/>-----<br/>-----.</p> <p>④ (현행과 같음)</p>                  |